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MIB KOREA」는 '기관 간 협력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고 한다)과 MIB KOREA간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및 양질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이에 관한 협약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당사자는 상대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다.

제3조(업무협력의 내용 및 범위)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개발원은 협약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 및 지침의 제·개정, 협력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자활센터의 발굴, 가맹점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설명 및 교육·컨설팅, 직무분석, 사업모니터링, 추가 연계사업의 개발업무 등을 추진한다.
2. MIB KOREA는 가맹점 개발 및 지원, 경영기법의 전수, 매장운영교육, 모니터링 및 직무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우수 매장 및 종사자 훈·포상 등을 실시한다.
3. 본 협약을 근거로 MIB KOREA는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조건의 변경은 개발원과 상호 합의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4. 기타 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자료의 교류를 위해 협조한다.

제4조(협조 창구 마련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운영) 협약당사자는 협약에 의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자를 지정하고 필요 시 협약당사자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이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MIB KOREA의 가맹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협약당사자 일방이 협약기간 만료 이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상대기관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비밀유지) 본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통해 상호 제공 받은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법령이나 정부기관 혹은 재판상의 요구에 따른 공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개발원은 MIB KOREA와 상호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광역자활센터에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협약변경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문서로 처리하며, 상호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효로 한다.
- ② 본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 당사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한다.
- ④ 본 협약의 당사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협약 이후 발생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협약의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 날인하여 협약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5월 1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MIB KOREA

원 장 이 병 학 대 표 주 기 홍

이 병 학

주 기 홍